

안전검사 연기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	건물명(상호)		
	대표자 성명	대표자 생년월일	
	사무소 소재지	사무소 전화번호/팩스번호	
	승강기 소재지		

연기대상 승강기	승강기의 종류		승강기 번호	정기검사주기 도래일	안전검사 연기사유 번호
	구조	용도		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[]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, 지정검사기관의 장

귀하

[] 행정안전부장관

붙임서류	안전검사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유의사항

안전검사 연기사유 번호란에는 안전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-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-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(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합니다)
-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처리절차

